

IV. 정책 과제

- 조세 부담의 형평성 기조는 유지하되 고령화 대비를 위해 과세대상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**세액공제율 조정** 등이 이루어져야 함.
 - **연금저축(퇴직연금 포함)** 등과 같이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 항목의 경우 **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**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.
 - 현행 12% 세액공제율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5% 이상으로 조정함.
 - 과표소득 구간 증가에 따른 한계세율 증가로 **한계 과표소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** 제도 개선이 필요함.
 - 과표소득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는 과표소득 구간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9%p(6%→15%, 15%→24%), 11%p(24%→35%)로 급증함.
 - 따라서, 해당 세 부담에 대해 일정수준을 감액하거나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.
- 장기적으로 **고령화 추세와 복지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**하여 세액공제 한도 설정 등과 같은 소득세제 개편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 - 적격개인연금(연금저축)의 세액공제 한도 상향조정, 가입자 속성별(근로자, 자영업자 등) 세제 차등화, 법인세제 검토 등